

사천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

(의안번호 제1호 2003. 1. 9)

총무위원회
2003. 1. 23(목)

1. 심사경과

- 가. 2003. 1. 9 : 사천시장제출
- 나. 2003. 1. 9 : 총무위원회회부
- 다. 2003. 1. 22 : 사천시의회제73회임시회제1차총무위원회상정의결

2. 제안설명요지(환경보호과장 이양호)

가. 제안이유

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24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1) 설치목적 및 적용범위 (안 제1조, 제2조)
- 2) 주민지원 대상지역 및 사업의 종류 (안 제4조, 제5조)
- 3)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임무 (안 제6조, 제7조)
- 4) 사업비 배분기준, 지원비율, 지원대상 (안 제8조, 제9조, 제10조)
- 5) 사업비 신청, 집행, 지출 (안 제11조, 제13조, 제14조)
- 6) 결산보고 등 (안 제20조)

3. 검토보고요지(전문위원 박명돈)

본 제정조례안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법적인 문제는 없고 시행에도 특별한 문제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: 없음